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학금규정시행규칙폐지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은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이며, 개별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행규칙이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교육기본법

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교육부령 제 호

장학금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

장학금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272